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7.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7월 2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선우근

### 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당직근무시 각종 민원 증가로 당직 근무의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의 불만 및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가 상승률을 비교할 때 2006년 당직 수당이 인상된 후 현재까지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,

또한 우리 구는 자치구 평균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현재 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50,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10,000원이 인상된 60,000원을 지급하고, 휴일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중 근무의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20,000원을 인상하여 70,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.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**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각종 생활민원이 폭증하여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당직근무 직원의 불만과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반면,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당직수당에 대한 인상이 없었으며,

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할 때에도 평균적으로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,

올 8월부터 시행할 경우 2천 7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